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H) [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H)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투자신탁(H)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4. 10. 1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 10. 17.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트러스트자산운용에서 고유자산을 투자한 펀드로 향후 투자금 회수 계획에 따라 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펀드 코드: AY536)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H) [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MSCI AC Asia USD Index×100%)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90%이상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670%	0.700 %	1.750%	1.904%	298	502	712	1,151	2,36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1)	없음	2.270%	1.300%	1.860%	2.504%	263	532	808	1,378	2,928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1.320%	0.350%	1.290%	1.554%	212	380	554	918	1,94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1.470%	0.500%	1.470%	1.704%	179	364	554	954	2,071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3~3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4.8.30 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6.29				
			23.6.30 ~24.6.29	22.6.30 ~24.6.29	21.6.30 ~24.6.29	19.6.30 24.6.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1)(%)	14.12.30.	9.17	5.18	-4.32	2.78	3.08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3.05				
	수익률 변동성(%)		11.15	12.29	14.22	15.88	15.61				
(주 1)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펀드 기준)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함으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투자신탁의 외화표시자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장외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도포지션구축 등의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또한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헤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7 시 경과후: 5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 영업일에 지급 · 17 시 경과후: 5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9 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C1 클래스 가입 후 보유기간이 1 년 경과시 마다 C2, C3, C4 클래스로 자동전환됩니다. 다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4. 10. 17.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5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채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소득공제 (S-T)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트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AY53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Y537
수수료선취-온라인(Ae)	AY5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AY5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Y5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Y5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Y5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Y5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AY5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AY54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92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92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92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92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B92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92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T98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투자신탁(H) [주식]	AY53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Y537
수수료선취-온라인(Ae)	AY5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AY5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Y5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Y5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Y54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Y5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AY54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AY54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92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92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92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92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B92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92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T98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기준일	변경사항
2014.12.28.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14.12.30.	- 투자신탁 최초 설정
2015.12.01.	- 클래스 추가(S, Cp, Cp-E, Cp2, Cp2-F, S-P)
2016. 02.29.	- 모투자신탁 투자비중 정정 (100% 이하 → 90% 이상)
2017. 05.31.	- 환매수수료 삭제
2017.07.27.	- Cp2-E 클래스 신설
2018.10.11.	- 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홍익 → 이태하)
2019.10.30.	-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추가 (강우종)
2020.09.30.	-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2020.10.5. 시행)
2021.01.08	- 책임/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 이태하, 부책임: 강우종 → 책임: 강우종, 부책임: 이태하)
2024.03.21.	-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이태하 → 송용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기준일	변경사항
2014.12.28.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14.12.30.	- 투자신탁 최초 설정
2018.10.11.	- 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안홍익 → 이태하)
2019.10.30.	-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추가 (강우중)
2020.09.30.	- 컷오프 제도 시행에 따른 매입/환매시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2020.10.5. 시행)
2021.01.08	- 책임/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 이태하, 부책임: 강우중 → 책임: 강우중, 부책임: 이태하)
2024.03.21.	-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 (이태하 → 송용주)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 (성수동 1 가) (☎ 6308-0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4. 9. 30. 기준)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강우중	1982년	책임 운용역 (부장)	4년 11개월	학력 북경대 금융학 학사
				경력 18.12~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해외운용팀
				18.02~18.07 QQQ Capital Management 리서치팀
				13.03~18.01 Truston Asset Management Singapore 리서치팀
송용주	1982년	부책임 운용역 (부장)	1년 6개월	12.06~13.02 트러스톤자산운용 리서치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학력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학사
				이화여대 국제학 석사
				경력 22.08~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해외운용팀

19.05~22.07 대신증권 장기전략리서치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해외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역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이며, 부책임운용역은 책임운용역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 [주식]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 [주식]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음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4. 9. 30. 현재, 단위:개,억원 %)

성명	전체 운용현황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우중	5	114	-	-	16.73	10.40	16.73	10.40
송용주	5	114	-	-	-	-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비고
책임운용역	강우중	2021.01.08~현재	-
부책임운용역	이태하	2021.01.08~2024.03.20	-
	송용주	2024.03.21~현재	-

※ 최근 3년 동안의 변경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 [주식]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과 같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Y537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AY538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AY539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AY540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AY541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AY542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Y543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AY544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AY545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9223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9224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9225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92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B9227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연금, 기관 (Cp2-F)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 인연금(S-P)	B9228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 금(Cp2-E)	BT9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채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소득공제 (S-T)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라.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 투자신탁[주식]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 투자신탁(H) [주식]	9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 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60% 이상 투자, 채권 40% 이하 투자
	투자목적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MSCI AC Asia USD Index(KRW) × 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철저한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4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 × 100%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이상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 파생상품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3)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4) 유동성자산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트러스트온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지분증권 (주식 등)	60%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신용평가등급이 A0이상)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이 A0이상)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 환매조건부 매수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9) 증권 대여 ^{주2)}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10) 증권 차입 ^{주3)}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2) 유동성자산	-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파생상품 투자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라) 법시행령 제80 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투자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투자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시행령 제80 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라)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6)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3),4),5)-라)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 × 100%

□ 트러스트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철저한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아시아 지역 외 국가에서 발행·유통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주식예탁증서(DR) 포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주1)}를 가진 기업

- 뛰어난 기술력 및 높은 브랜드 가치 등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또는 독점권을 가진 기업

주1)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 : ‘해자’란 중세시대 성 주변에 적이 침투하기 어렵게 만든 도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경제적 해자’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높은 진입장벽 및 확고한 경쟁 우위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2. 인구 구조 및 소비 행태 변화 등 사회구조 변화과정에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 인구의 노령화 진행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카,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대용식) 등의 산업 내 기업

3. 새로운 산업(New Fashion)의 특성에 주목

- 플랫폼이 접목되면서 변화하는 산업 특성에 주목
- 중국 도시화 : 산업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일한 국가로 새로운 패턴의 산업화 진행

4. 금융위기 이후 가계, 정부, 기업의 부 감소로 인하여 효율성 강조에 따라 관련 산업 성장 기대

- 물류효율성, 에너지효율성, Self-healthcare 등과 관련된 산업 내 기업에 주목
- : 공장자동화 산업, 건강보조식품 산업 등

[주요 투자대상국가의 현황]

대상 국가	내용 ^{주1)}					
한국	· 글로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 수출주도 경제인 한국에 긍정적인 것 · 기업 배당 확대 정책으로 한국시장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됨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52백만명	\$ 32,423	2020년	2021년	2022년
				-0.7	4.3	2.6
중국	· 과거 고정자산투자 및 수출을 통한 성장 보다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성장에 따른 경제성장이 기대됨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14.1억명	\$12,720	2020년	2021년	2022년
				3.0	8.4	3.0
	※ 이 투자신탁은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시, 트러스트자산운용의 RQFII 및 후강통 제도 등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제도를 이용한 투자 관련 위험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의 "나. 특수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 고령화로 인해 내수 시장이 위축되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엔화 약세 전략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음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1.3억명	\$33,824	2020년	2021년	2022년
				-4.3	2.1	1.0
홍콩	· 일국양제 이후 대중국 의존도 확대되는 구조로 변화, 향후 중국과의 무역/물류, 금융, 전문서비스 영역에서 성장세가 기대됨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7.4백만명	\$48,984	2020년	2021년	2022년
				-0.4	-0.9	-0.9
대만	· IT를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인구 및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경제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약 23백만명	\$32,690	3.4	6.5	2.4
싱가포르	· 인도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배후로 금융시장 및 서비스업의 성장세 기대됨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6백만명	\$82,808	2020년	2021년	2022년
				-3.9	8.9	3.6
인도네시아	· 고무, 전기차 핵심 소재 등 상품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인구구조 등을 감안할 때 매력적인 소비 시장임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2.8억명	\$4,788	2020년	2021년	2022년
				-2.1	3.7	5.3
말레이시아	·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상품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큼.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34백만명	\$11,993	2020년	2021년	2022년
				-5.5	3.3	8.7
태국	· 정치 불안 지속되나, 내수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잠재력 있는 경제시장임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72백만명	\$6,910	2020년	2021년	2022년
				-6.1	1.5	2.6
인도	· 탄탄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소비와 인프라 투자 여지가 충분하여 글로벌 경기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한 매력적인 시장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14.2억명	\$2,411	2020년	2021년	2022년
				-5.8	9.1	7.2
필리핀	· 재정건전성이 높고 개인의 신용버블도 가장 낮아서 동남아시아에서 거품이 가장 낮은 경제. 새로운 정권이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일 경우 고성장 가능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1.2억명	\$3,499	2020년	2021년	2022년
				-9.5	5.7	7.6
베트남	· 매력적인 인구 구조와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생산 기지 이전 효과를 가장 강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인구 및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	GDP 성장률 추이		
		약 98백만명	\$4,164	2020년	2021년	2022년
				2.9	2.6	8

주 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2) The World Bank 2024 년 1 월 기준, 대만은 IMF 2023 년 10 월 기준

※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 × 100%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선정사유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 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 및 발표하는 MSCI AC Asia USD Index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MSCI AC Asia USD Index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관리

① 환헤지 전략 및 목표 헤지비용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여 투자 국가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국가별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 회피를 위해 모투자신탁의 외화표시자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장외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도포지션구축 등의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홍콩달러화(HKD) 등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따라 상기 통화 외의 통화에 환헤지 전략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전략은 외화자산에 대하여 60% 이상^{주1)}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 헤지비용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주1) 목표 헤지비용은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 투자수단의 유용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운용역의 판단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한국거래소 통화선물 등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으로부터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면 추가 이익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반면,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④ 환헤지의 비용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조합하거나 어느 한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 되어 있어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hez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외화 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투자신탁의 외화표시자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장외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도포지션구축 등의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또한 환hez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 등 환hez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hez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환hez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hez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hez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펀드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국가별 구성 및 비중, 업종 구성, 종목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주식 투자 방법에 따른 위험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시, 트러스트자산운용의 RQFII 및 후강통 제도 등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 의	후강통(滬港通)은 상하이로 뜻하는 ‘후(沪)’와 홍콩을 뜻하는 ‘강(港)’, 그리고 두 곳을 소통시킨다는 ‘통(通)’을 조합한 단어로, 중국 내륙의 상하이와 홍콩의 증권시장 간 주식거래를 상호 연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후강통은 홍콩의 투자자에게 상하이 거래소 주식의 거래를 개방하는 후구통(沪股通)과 상하이 투자자에게 홍콩거래소 주식의 거래를 개방하는 강구통(港股通)으로 분류됩니다.	위험
	후 강 통 제 도	이는 중국 내륙과 홍콩의 주식시장 사이에 거래 결제를 상호 연계시키는 시스템하에서 두 시장의 투자자는 현지 증권사와 현지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대 지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후강통제도는 거래시간, 결제방식, 공휴일, 거래단위 등 주문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현지 시장의 거래방식과 규칙을 따르나 투자대상종목, 총투자한도 및 일일투자한도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일별 및 총액한도)에 따른 투자 제한으로 주식매수 타이밍을 놓치거나, 일정기간 중국 본토의 주식시장에 투자가 곤란한 경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한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운용전략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홍콩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증권거래소가 휴장일 때는 동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정 의
		향후 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투자대상종목, 한도, 방식, 세제사항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RQ FII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이하 “RQFII”)란 중국 정부에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

	제 도	춘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위안화를 이용하여 중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2014년 7월 800억 위안(약 13조원)에 달하는 한도를 부여 받았습니다.
	위 험	이 투자신탁은 트러스트자산운용의 RQFII 한도를 활용하여 중국 본토 주식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기간 중 중국당국으로부터 RQFII 자격을 제한 받거나 규정 위반에 따른 투자제한을 받을 수 있고 RQFII 제도 자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RQFII관련 규정의 해석이 중국당국의 재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본토 시장에 투자가 곤란할 수 있고 환매 및 송금제한 등 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제 상 위 험	현재 중국 과세 당국은 중국본토에서 발행하는 증권으로부터 발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중국 본토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발표(2014.11.17)하였습니다. 따라서 후구통 및 RQFII 제도에 따른 중국 본토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제도 시행일부터 일정기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과세당국의 세제혜택에 대한 정책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투자신탁은 예상된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거래수수료 및 스왑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반하며, 이러한 비용은 펀드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 (DR)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 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1)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요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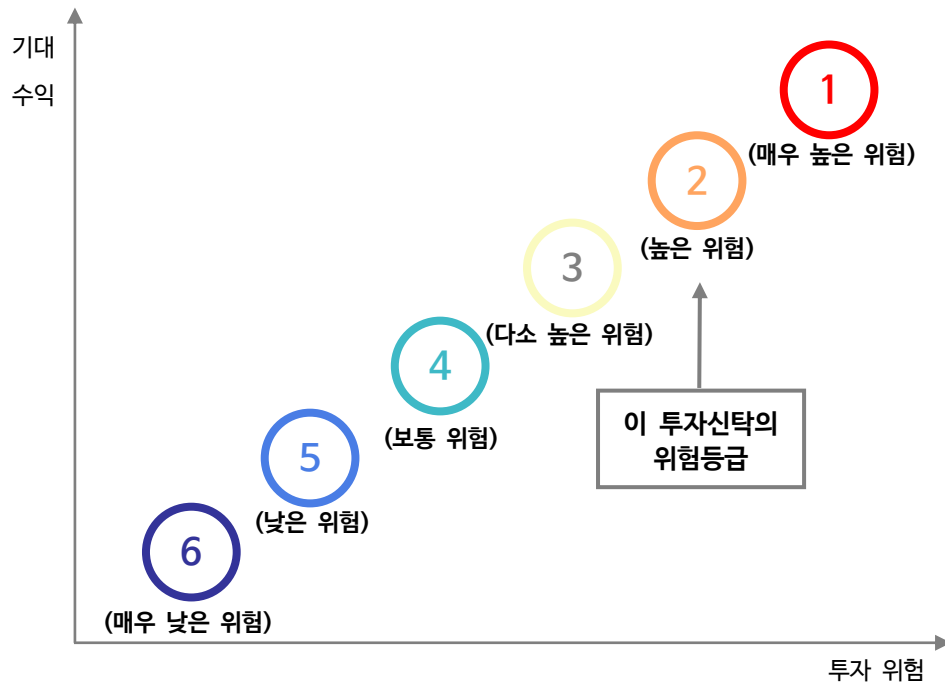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표준편차	투자위험등급
15.17%	2 등급 (높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국가 내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서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15.17%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 하더라도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결산일 기준 이전 3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재산정하여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16.7.2.	1등급	2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
2018.1.9.	2등급	3등급	▶ 운용기간 3년이 경과하여 투자위험등급 분류 체계를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기준에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변경 ▶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이 10%초과~15%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
2019.1.11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이 15%초과~25%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2020.2.14	2등급	3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이 10%초과~15%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
2021.01.08	3등급	2등급	▶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이 15%초과~25%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 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 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면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3)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4)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5)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7)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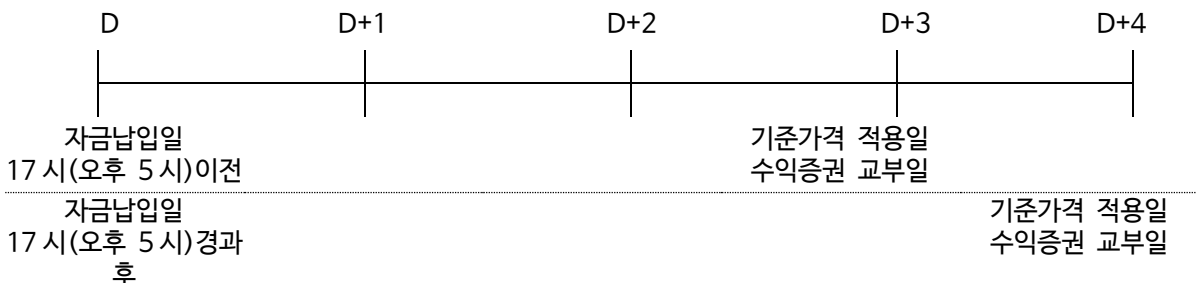
- ①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②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③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

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④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C2)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C3)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⑥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C4)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⑦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⑧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 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⑪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⑫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⑭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 ⑮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⑯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② 17시[오후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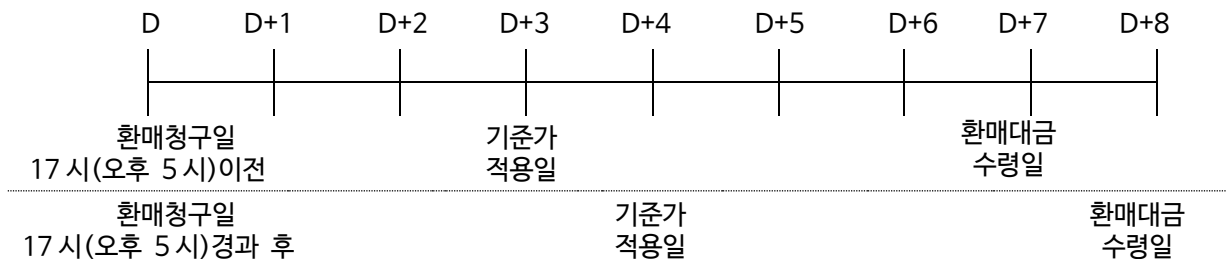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①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 이전(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8 영업일 이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일부환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서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1) 전환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에 따라 다음 경우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 ③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 실제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times 1,000$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 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 날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그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 회사가 제시하는 가 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 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C4)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증권 거래 비용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회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TER)	동종 유형 총 보수	합성 총 보수·비용 (모투자 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900	0.700	0.050	0.020	1.670	0.000	1.670	1.750	1.904	0.129
수수료선취-온라인(Ae)	0.900	0.350	0.050	0.020	1.320	0.000	1.320	1.290	1.55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1)	0.900	1.300	0.050	0.020	2.270	0.000	2.270	1.860	2.50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2)	0.900	1.100	0.050	0.020	2.070	0.000	2.070	-	2.30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3)	0.900	0.900	0.050	0.020	1.870	0.000	1.870	-	2.10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4)	0.900	0.700	0.050	0.020	1.670	0.000	1.670	-	1.904	0.12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900	0.500	0.050	0.020	1.470	0.000	1.470	1.470	1.70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객(I)	0.900	0.030	0.050	0.020	1.000	0.000	1.000	-	1.23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W)	0.900	0.000	0.050	0.020	0.970	0.000	0.970	-	1.204	0.129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0.900	0.350	0.050	0.020	1.320	0.000	1.320	-	1.55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	0.900	0.720	0.050	0.020	1.690	0.000	1.690	-	1.924	0.12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 인연금(Cp- E)	0.900	0.360	0.050	0.020	1.330	0.000	1.330	-	1.56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0.900	0.700	0.050	0.020	1.670	0.000	1.670	-	1.90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기 관 (Cp2-F)	0.900	0.025	0.050	0.020	0.995	0.000	0.995	-	1.229	0.12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	0.900	0.280	0.050	0.020	1.250	0.000	1.250	-	1.484	0.12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0.900	0.350	0.050	0.020	1.320	0.000	1.320	-	1.554	0.129

퇴직연금 (Cp2-E)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22.12.30~2023.12.29)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22.12.30~2023.12.29)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5,854,637 원입니다.
*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해당 클래스의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기타비용 비율 및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4.8.30. 기준)
- 주6)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2022.12.30~2023.12.29)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없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4	453	638	1,026	2,11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98	502	712	1,151	2,369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8	331	479	791	1,67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12	380	554	918	1,9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8	483	734	1,256	2,6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63	532	808	1,378	2,92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314	479	827	1,80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79	364	554	954	2,0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5	214	328	568	1,25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30	264	403	698	1,5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208	318	551	1,22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26	258	394	681	1,499
수수료후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9	282	431	745	1,635

-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63	332	506	873	1,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77	361	550	946	2,0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02	410	624	1,072	2,3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40	284	434	750	1,6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64	334	509	878	1,91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75	356	543	936	2,0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00	406	618	1,061	2,2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04	213	326	565	1,2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29	263	402	695	1,52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31	267	408	706	1,55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56	317	484	835	1,8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39	282	431	745	1,63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63	332	506	873	1,903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C 클래스는 수익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10 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 3) S 클래스는 10 년 동안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12월 23일"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4)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1)}$$

주1) 환급비율: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0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24.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②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세액공제(2023.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여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8기(2021.12.30 - 2022.12.29)	회계감사 미대상	해당사항 없음
제9기(2022.12.30 - 2023.12.29)	회계감사 미대상	해당사항 없음
제10기(반기)(2023.12.30 - 2024.6.29)	회계기간 미경과	-

□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10기(반기)	제9기	제8기
		(2024.6.29)	(2023.12.29)	(2022.12.29)
운용자산		4,734,917,195	4,433,617,020	4,043,124,588
유가증권		4,496,777,039	4,206,439,603	3,900,871,829
현금 및 예치금		238,140,156	227,177,417	142,252,759
기타자산		90,724,714	90,915,068	180,275,739
자산총계		4,825,641,909	4,524,532,088	4,223,400,327
기타부채		25,494,075	18,453,587	21,245,822
부채총계		25,494,075	18,453,587	21,245,822
원본		4,530,549,217	4,680,941,581	4,816,772,607
이익조정금		269,598,617	-174,863,080	-614,618,102
자본총계		4,800,147,834	4,506,078,501	4,202,154,505
손익계산서				
항	목	제10기(반기)	제9기	제8기
		(2023.12.30 - 2024.6.29)	(2022.12.30 - 2023.12.29)	(2021.12.30 - 2022.12.29)
운용수익		449,849,675	521,515,830	-906,495,016
이자수익		3,537,511	6,784,943	4,060,244
배당수익		0	49,311,276	37,619,584
매매/평가차익(손)		446,312,163	465,419,610	-948,201,093
기타수익		1	1	26,249
운용비용		37,339,856	72,629,971	72,280,122
관련회사보수		37,207,446	72,377,521	72,019,54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32,410	252,450	260,577

당기순이익	412,509,819	448,885,859	-978,775,138
매매회전율(%)	43.30	55.58	56.57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894	2	0.103	4,597	6	0.127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394	-	-	0.019	-	-
합 계	1,895	2	0.103	4,597	6	0.127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 2)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의 경우 모투자신탁 내에서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14,909	2,332	200,572	2,263	4,075	55.53	31.92

주 1)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의 경우 모투자신탁 내에서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 2)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 3)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0 기(반기)	제 9 기	제 8 기
	2024.6.29	2023.12.29	2022.12.29
운용자산	4,313,589,362	4,433,617,020	4,043,124,588
현금및예치금	238,140,156	227,177,417	142,252,759
현금및현금성자산	238,140,156	227,177,417	142,252,759
유가증권	4,075,449,206	4,206,439,603	3,900,871,829
수익증권	4,075,449,206	4,206,439,603	3,900,871,829
기타자산	90,724,714	90,915,068	180,275,739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3,916,579	410,761	20,074,998
미수이자	566,353	503,992	311,433
미수배당금	0	49,311,276	37,619,584
외화환산손익조정	66,241,782	0	0
기타미수입금	0	40,689,039	122,269,724
자 산 총 계	4,404,314,076	4,524,532,088	4,223,400,327
기타부채	25,494,075	18,453,587	21,245,822
해지미지급금	6,360,701	419,144	4,266,194
미지급운용수수료	10,607,973	9,718,118	9,452,176
미지급판매수수료	7,680,958	6,988,190	6,773,753
미지급수탁수수료	589,325	539,892	525,115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35,728	215,952	210,043
수수료미지급금	19,390	19,370	18,540
기타미지급금	0	552,916	0
미지급이익분배금	0	5	1
부 채 총 계	25,494,075	18,453,587	21,245,822
원 본	4,530,549,217	4,680,941,581	4,816,772,607
이익잉여금	269,598,617	-174,863,080	-614,618,102
자 본 총 계	4,800,147,834	4,506,078,501	4,202,154,505
부채 및 자본 총계	4,825,641,909	4,524,532,088	4,223,400,327
총좌수	3,487,384,886	3,583,801,343	3,726,185,000
기준가격	1,381.92	1,242.79	1,122.67

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0 기(반기)	제 9 기	제 8 기	
	2023.12.30 -	2022.12.30 -	2021.12.30 -	
	2024.6.29	2023.12.29	2022.12.29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449,849,675	521,515,830	-906,495,016	
투자수익	3,537,511	56,096,219	41,679,828	
이자수익	3,537,511	6,784,943	4,060,244	
배당금수익	0	49,311,276	37,619,584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49,456,872	647,367,407	334,768,065	
지분증권매매차익	10,655,419	47,193,750	2,966,015	

외환거래매매차익	91,367,961	212,009,172	209,532,326
지분증권평가차익	421,327,833	348,028,362	0
외환거래평가차익	26,105,659	40,136,123	122,269,724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03,144,709	181,947,797	1,282,969,158
지분증권매매차손	856,608	8,352	77,746,687
외환거래매매차손	102,288,101	180,234,293	260,264,624
지분증권평가차손	0	1,705,152	944,957,847
외환거래평가차손	0	82,133,601	0
기타운용수익	1	1	26,249
운 용 비 용	37,339,856	72,629,971	72,280,122
운용수수료	20,660,599	40,340,537	40,139,530
판매수수료	14,939,933	28,899,436	28,758,103
수탁수수료	1,147,800	2,241,118	2,229,948
사무수탁수수료	459,114	896,430	891,964
기타운용비용	132,410	252,450	260,577
당기순이익	412,509,819	448,885,859	-978,775,138
좌당순이익	116.24	121.58	-264.4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1)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투자신탁(H) [주식]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3,668	5,051	317	387	295	361	3,726	4,219
2022.12.30-2023.12.29	3,726	4,183	253	305	427	522	3,584	4,524
2023.12.30-2024.6.29	3,584	4,454	109	139	262	333	3,487	4,819

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70	93	8	9	8	9	71	76
2022.12.30-2023.12.29	71	76	4	4	15	17	59	70
2023.12.30-2024.6.29	59	70	1	2	31	36	29	38

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100	123	28	30	14	15	114	114
2022.12.30-2023.12.29	114	114	17	18	56	61	74	82
2023.12.30-2024.6.29	74	82	5	6	28	33	52	63

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13	17	2	2	0	0	15	15
2022.12.30-2023.12.29	15	15	2	2	1	1	15	18
2023.12.30-2024.6.29	15	18	1	1	0	0	16	21
2023.12.30-2024.6.29	0	0	0	0	0	0	0	0

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1	1	0	0	1	1	0	0
2022.12.30-2023.12.29	0	0	0	0	0	0	0	0
2023.12.30-2024.6.29	0	0	0	0	0	0	0	0

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3	2	3	2	4	3	2	1
2022.12.30-2023.12.29	2	1	0	0	2	1	0	0
2023.12.30-2024.6.29	0	0	0	0	0	0	0	0

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3,271	3,447	3	3	1	1	3,274	2,788
2022.12.30-2023.12.29	3,274	2,788	2	2	0	0	3,275	3,085
2023.12.30-2024.6.29	3,275	3,085	0	0	0	0	3,276	3,403

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66	95	15	19	9	12	72	84
2022.12.30-2023.12.29	72	84	10	13	24	30	57	74
2023.12.30-2024.6.29	57	74	4	5	3	4	58	83

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0	0	0	0	0	0	0	0
2022.12.30-2023.12.29	0	0	0	0	0	0	0	0
2023.12.30-2024.6.29	0	0	0	0	0	0	0	0

1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단위 : 백만원,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38	58	5	6	4	5	39	48
2022.12.30-2023.12.29	39	48	12	16	10	13	41	56
2023.12.30-2024.6.29	41	56	1	1	2	3	40	60

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단위 : 백만원,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28	38	4	4	5	6	26	29
2022.12.30-2023.12.29	26	29	26	31	30	36	22	27
2023.12.30-2024.6.29	22	27	1	1	3	4	20	27

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단위 : 백만원,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0	0	0	0	0	0	0	0
2022.12.30-2023.12.29	0	0	0	0	0	0	0	0
2023.12.30-2024.6.29	0	0	0	0	0	0	0	0

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단위 : 백만원,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2	2	1	1	0	0	3	2
2022.12.30-2023.12.29	3	2	1	1	0	0	4	3
2023.12.30-2024.6.29	4	3	0	0	0	0	4	4

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93	99	36	35	30	29	99	86
2022.12.30-2023.12.29	99	86	35	33	17	16	116	112
2023.12.30-2024.6.29	116	112	7	7	49	48	75	80

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615	663	171	161	105	100	682	594
2022.12.30-2023.12.29	682	594	123	114	180	171	624	602
2023.12.30-2024.6.29	624	602	74	72	112	110	586	623

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 : 백만원,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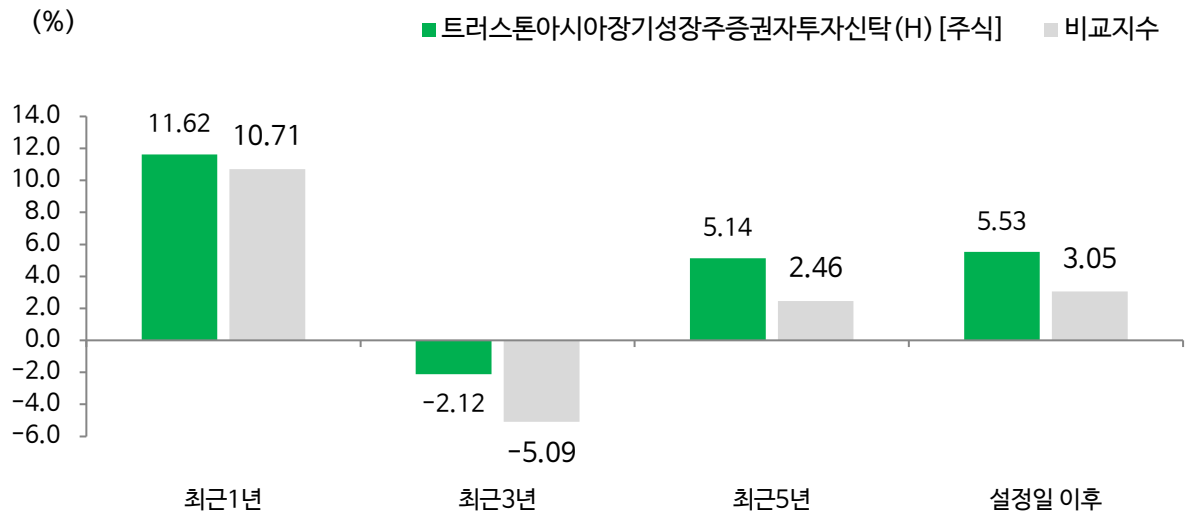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1.12.30-2022.12.29	413	441	121	114	113	104	422	365
2022.12.30-2023.12.29	422	365	78	72	108	102	391	376
2023.12.30-2024.6.29	391	376	43	43	61	59	374	397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클래스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6.30 ~24.6.29	22.6.30 ~24.6.29	21.6.30 ~24.6.29	19.6.30 ~24.6.29	설정일 ~24.6.29
아시아장기성장주(H) [주식]		11.62	7.59	-2.12	5.14	5.53
비교지수	14.12.30	10.71	6.30	-5.09	2.46	3.05
수익률변동성		11.15	12.29	14.22	15.88	15.6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4.12.30	9.82	5.81	-3.74	3.40	3.79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3.05
수수료선취-온라인(Ae)	15.06.16	10.19	6.18	-3.41	3.76	2.25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2.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14.12.30	9.17	5.18	-4.32	2.78	3.08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3.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15.12.31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1.02.08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4)	18.01.03	9.81	5.81	-3.75	3.40	0.59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0.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5.01.20	10.03	6.02	-3.55	3.61	6.32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3.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I)	14.12.30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6.03.03	10.19	6.18	-3.41	3.76	5.02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4.7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15.12.30	10.26	6.25	-3.34	3.83	3.60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3.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W)	16.03.14	11.33	7.38	-2.32	4.96	5.35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4.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17.12.20	9.79	5.79	-3.76	3.39	0.64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0.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17.10.26	10.18	6.17	-3.42	3.75	1.14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1.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	18.02.14	9.81	5.81	-3.75	3.40	0.97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0.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	18.02.20	10.19	6.18	-3.41	3.77	0.93
비교지수		10.71	6.30	-5.09	2.46	0.05

주 1)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 %]

클래스	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3.6.30 ~24.6.29	22.6.30 ~23.6.29	21.6.30 ~22.6.29	20.6.30 ~21.6.29	19.6.30 ~20.6.29
아시아장기성장주(H) [주식]	14.12.30	11.66	3.68	-19.01	26.08	8.71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4.12.30	9.85	1.95	-20.37	24.02	6.91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15.06.16	10.22	2.31	-20.09	24.44	7.28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1)	14.12.30	9.19	1.33	-20.85	23.33	6.22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2)	15.12.31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3)	21.02.08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4)	18.01.03	9.84	1.95	-20.37	24.02	6.90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15.01.20	10.06	2.16	-20.21	24.26	7.13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I)	14.12.30	-	-	-	-	-
비교지수		-	-	-	-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16.03.03	10.22	2.31	-20.08	24.44	7.28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15.12.30	10.29	2.38	-20.03	24.53	7.35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W)	16.03.14	11.36	3.56	-19.18	25.87	8.60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17.12.20	9.82	1.93	-20.38	24.02	6.89

개인연금(Cp)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7.10.26	10.21	2.30	-20.09	24.43	7.27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18.02.14	9.84	1.95	-20.37	24.02	6.90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18.02.20	10.22	2.31	-20.09	24.45	7.30
비교지수		10.74	2.05	-24.35	32.59	-0.36

주 1) 비교지수 : MSCI AC Asia USD Index 10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4.3.31. 현재/단위:백만원,%]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장내 파생상품		단기대출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일본	3,864	100.00	-	-	-	-	-	-	-	-	3,864	38.59
홍콩	1,115	100.00	-	-	-	-	-	-	-	-	1,115	11.13
중국	748	92.79	-	-	-	-	58	7.21	-	-	807	8.06
대만	1,732	100.00	-	-	-	-	-	-	-	-	1,732	17.30
대한민국	822	77.41	-	-	-	-	97	9.11	143	13.48	1,061	10.60
인도	716	99.88	1	0.12	-	-	-	-	-	-	717	7.16
미국	245	55.35	-	-	-	-	198	44.65	-	-	443	14.7
인도 네시아	127	100.00	-	-	-	-	-	-	-	-	127	1.27
중국H	147	100.00	-	-	-	-	-	-	-	-	147	1.46
자산합계	9,516	95.04	1	0.01	-	-	353	3.52	143	1.43	10,013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트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1 길 10 (성수동 1 가) (☎ 6308-0500)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trustonasset.com
자본금	137.75억원
이해관계인 (2024.9.30 기준)	이해관계신탁업자(30% 이상) : 농협은행 (59.03%)
회사연혁	1998.04 IMM투자자문(주) 설립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22.11 종합자산운용회사로 전환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제26기 (2023.12.31)	제25기 (2022.12.31)
1. 현금및예치금	14,610	16,575
2. 유가증권	54,051	51,419
3. 대출채권	1,580	1,722
4. 유형자산	11,847	11,482
5. 투자부동산	9,712	9,866
6. 기타자산	10,290	9,734
자산총계	102,090	100,798
1. 차입부채	5,000	8,000
2. 기타부채	6,326	3,978
부채총계	11,326	11,978
1. 자본금	13,775	13,775
2. 자본잉여금	11,408	11,36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84	-446

4. 이익잉여금	91,131	88,648
5. 기타자본항목	-24,566	-24,517
자본총계	90,764	88,820
부채 및 자본총계	102,090	100,798
영업수익	31,076	25,814
영업이익	3,326	-1,682
당기순이익	4,123	-605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별도재무제표기준 실적임

라. 운용자산 규모

(2024.9.30. 현재/단위:억원)

구분	증 권					기타 ^{주)}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65,685	6,716	4,504	684	264	39,012	116,865

※ 일임 및 자문 포함

주)기타 : 혼합자산, 특별자산 및 부동산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02-1588-1770)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hsbc.co.kr
회사 연혁	1982. 부산지점 설립 1984. 서울지점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02-6714-4600)
회사연혁	2003.04.01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KIS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주식회사에프엔가이드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⑥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

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
 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법제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2) 집합투자업자는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3)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 세미나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 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목적

1)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2)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이 가능

- 투자현황 : ①모집개시일(2014년 12월 30일)에 110억원을 투자 (H: 90억 / UH: 20억)

②최초 투자금 회수 계획에 따라 3년 유지 후 2018년 5월 일부 투자금액 회수

③2020년 12월 일부 투자금액 회수

④2021년 10월 일부 투자금액 회수

- 투자금액

대상 펀드	투자 금액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H) [주식]	9억원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투자신탁(UH) [주식]	16억원

- 투자기간 및 회수 계획

1) 최초 투자일로부터(2014.12.30)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계획임

2) 투자 기간 및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또는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3) 환매는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최초 환매시점 결정 이후 최소 3회 이상 분할하여 환매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